

대전 성남 우미 Lynn 뉴시티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특별공급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추천기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해당기관</th> </tr> </thead> <tbody> <tr> <td>국가유공자</td> <td rowspan="2">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td> </tr> <tr> <td>장기복무 제대군인</td> </tr> <tr> <td>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td> <td>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동과</td> </tr> <tr> <td>중소기업 근로자</td> <td>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td> </tr> <tr> <td>장애인</td> <td>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td> </tr> <tr> <td>시책 추진 해당자</td> <td>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td> </tr> </tbody> </table>	구분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동과	중소기업 근로자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장애인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시책 추진 해당자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구분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동과													
중소기업 근로자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장애인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시책 추진 해당자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주체 → 해당기관 : 공문 및 안내문 발송 ② 해당기관 → 사업주체 : 추천 대상자 명단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추천 대상자 명단 : 확정자 및 예비입주자 포함 ③ 사업주체 → 한국부동산원 : 추천 대상자 등록 ④ 확정자(예비입주자 포함) → 청약홈 : 특별공급 접수일에 신청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관의 자체기준에 의거 대상자 순위 확정 통보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대상자(확정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모든 특별공급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타 특별공급의 낙첨자와 함께 추천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23.11.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